

지 정 통 계
제 1 0 1 4 6 호
어 업 총 조 사

310.111
10146

2000 어업총조사 시 험 조 사 지 침 서

1999. 10.



891342

통 계 청

차 례

I. 2000 농·어업총조사 개요	3
1. 조사목적	3
2. 조사연혁	3
3. 법적근거	3
4. 조사기간	3
5. 조사체계	3
6. 조사대상	3
II. 시험조사 계획	4
1. 조사 기준시점 및 실시기간	4
2. 조사규모 및 지역	4
3. 조사체계	4
4. 조사인력	5
5. 조사방법	5
6. 조사항목	5
7. 단계별 수행업무	7
III. 조사대상 및 용어정의	8
IV. 조사원 수행사항	11
V. 준비조사	12
1. 준비조사 목적	12
2. 조사구요도 및 가구일람표 작성	12
VI. 본조사	15
1. 조사원 수칙	17
2. 조사표 기입시 유의사항	18

3. 조사표 기입요령	19
조사표 표지	19
1. 어업가구원 상황	21
2. 어업가구의 성격	30
3. 어업의 종류	33
4. 어선 및 선원 상황	42
5. 양식장 면적	45
6. 어업활동	48
7. 문화용품 및 가재보유 현황	51
VII. 조사표류 검토, 보완 및 제출	52
1. 조사표의 검토 및 보완	52
2. 조사표류 제출	54
□ 부록	57
○ 시험조사표	59
○ 가구일람표	64
○ 조사구요도	66
○ 조사표철	67
○ 조사원 업무일지	68
○ 농·어가별 조사항목 현황표	70
○ 연령조건표	72

I. 2000 농·어업총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농·어가 및 농·어업경영의 기본구조 현황과 변동추세를 파악하여

- 농·어업정책 수립 및 국가경제 주요지표의 작성
- 읍·면 단위까지의 지역통계 생산
- 농·어업관련 학술연구·분석·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각종 농수산통계 조사의 표본틀로 활용
- 국제간 자료교류 및 분석

2. 조사연혁

- 1961년에 UN/FAO의 1960 세계농업센서스에 처음 참가(어업 ; 1970년)
- 1990년까지 매10년마다 4차(3차)에 걸쳐 서기년도 끝자리가 "0"인해에 실시
- 1995년에는 대내외적인 농·어업여건의 급격한 변화와 지방자치제의 출범에 따라 특별히 총조사 규모로 실시
- 1998.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계청으로 이관

※ 2000세계농업센서스 : 각국 여건에 따라 1996~2004년중에 각각 실시

3. 법적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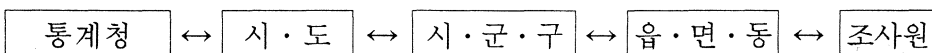
- 농업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41호
- 어업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46호

4. 조사기간

- 조사기준 시점 : 농업 및 해면어업 12월 1일, 내수면 어업 11월 1일
- 조사대상 기간 : 1999년 12월 1일~2000년 11월 30일(1년간)

※ 2000 농·어업총조사 : 2001년 3월중 본조사 실시예정

5. 조사체계



※ 협조기관 : 통계사무소 및 출장소

6. 조사대상 : 전국의 모든 농가 및 어가

II. 시험조사 계획

중점 추진사항

- ◆ 기존 조사항목의 타당성 및 현실성 검토
- ◆ 조사표, 조사지침 등의 개선의견 수집
- ◆ 농·어업조사구의 동시 활용방안 모색
- ◆ 현지 조사원 질적 향상방안 모색
- ◆ 2000농·어업총조사의 추진방향 설정 기초자료 수집
- ◆ 기타 농·어업총조사 추진능력 배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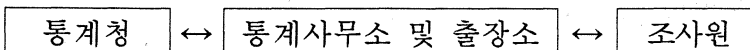
1. 조사 기준시점 및 실시기간

- 조사 기준시점 : 1999년 10월 1일 0시 현재
- 준비조사 : 1999년 10월 11일 ~ 10월 13일(3일간)
- 본조사 : 1999년 10월 14일 ~ 10월 27일(12일간)

2. 조사규모 및 지역

- 조사대상 : '95 농업 및 어업총조사시 설정한 농·어업조사구
- 조사규모 : 94개 농업 및 어업조사구(약 4,500여 농·어가)
- 조사지역
 - 농촌지역(50개 조사구)
'95농업조사구내 농가수 비율이 90%이상이고, 농가수가 60호 이내인 지역
 - 어촌지역(30개 조사구)
'95.어업조사구내 어가수 비율이 70%이상이고, 어가수가 40호 이내인 지역
 - 도·농복합지역(14개 조사구)
'95.농업조사구내 농가수 비율이 50~60%이고, 농가수가 60호 이내인 지역
- 조사구 배정 : 사무소(출장소)별 2개 조사구
- ※ 어촌지역의 어업조사구에서는 조사구내의 농가 및 어가를 동시에 조사

3. 조사체계



4. 조사인력 : 총 94명(조사구당 1명)

- 임시채용 조사원 : 47명(채용기간 : 10월4일~10월27일 중 16일)
- 조사공무원 : 사무소(출장소)별 각 1명(총 47명)
- ※ 지도공무원 : 사무소 및 출장소별로 2명 이상의 지도원 지정

5. 조사방법

- 조사구별로 지정된 조사원이 해당 조사구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농·어가 여부를 확인(준비조사)
- 확인된 농·어를 대상으로 면접·청취조사(본조사)

6. 조사항목

가. 농업총조사 : 총 63개 항목

- 「가구원(농가인구)」에 관한 사항(11개 항목)
 - ① 가구원 성명 ② 경영주와의 관계 ③ 연령 ④ 성별 ⑤ 혼인상태 ⑥ 영농 승계자
 - ⑦ 교육정도 ⑧ 농사종사기간 ⑨ 농사이외의 일 ⑩ 주종사 분야
 - ⑪ 농사이외의 일 중 주종사 분야
- 「농경지」에 관한 사항(10개 항목)
 - ① 논면적(소유관계, 차용처, 이모작논, 수리상태, 경지정리상태) ② 논농사 위탁상황
 - ③ 밭면적(소유관계, 차용처) ④ 수원지 면적 ⑤ 과수원면적
- 「농작물 수확」에 관한 사항(4개 항목)
 - ① 수확면적(논벼 등 21종) ② 수확여부(들깨등 15종) ③ 시설면적 [비닐 하우스(일시/영구), 유리온실, 기타시설] ④ 시설내 작물별 면적(토마토 등 19종)
- 「가축·가금」에 관한 사항(5개 항목)
 - ① 한육우(총마리수, 암·수컷) ② 젓소 총마리수 ③ 돼지 총마리수
 - ④ 닭(총마리수, 산란용, 육계용) ⑤ 기타가축 마리수(젓산양 등 13종)
- 「농기계 및 기구」에 관한 사항(12개 항목)
 - ① 경운기 ② 트랙터 ③ SS분무기 ④ 정미기 ⑤ 콤바인 ⑥ 바인더
 - ⑦ 사료(절단, 예취, 분쇄기) ⑧ 관리기 ⑨ 건조기 ⑩ 양수기 ⑪ 이앙기
 - ⑫ 운반용 트럭
- 「문화용품 및 시설」에 관한 사항(6개 항목)
 - ① 텔레비전 ② 컴퓨터 ③ 비디오 ④ 승용차 ⑤ 입식부엌 ⑥ 수세식 화장실
- 「영농형태」에 관한 사항(9개 항목)
 - ① 논벼 ② 과수 ③ 채소 ④ 특용작물 ⑤ 화훼 ⑥ 전작 ⑦ 축산 ⑧ 양잠 ⑨ 기타

- 「농축산물 판매」에 관한 사항(3개 항목)
 - ① 농축산물 판매금액 ②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농사 ③ 판매방법
- 「향후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3개 항목)
 - ① 경영주 지속기간 ② 향후 5년 이내 경지규모 변동계획
 - ③ 향후 5년 이내 영농형태 전환계획

나. 어업총조사【해면어업 : 총 48개 항목】

- 「가구원(어가인구)」에 관한 사항(15개 항목)
 - ① 가구원 성명 ② 경영주와의 관계 ③ 연령 ④ 성별 ⑤ 혼인상태 ⑥ 학력 ⑦ 주종사분야 ⑧ 어업종사기간 ⑨ 어업종사형태 ⑩ 어업 중 주종사분야 ⑪ 어업이외의 일에 종사한 기간 ⑫ 어업이외의 일 중 주종사 분야
 - ⑬ 겸업어가 ⑭ 겸업가구의 주종사 분야 ⑮ 주된 어업형태
- 「어업의 종류」에 관한 사항(2개 항목)
 - ① 어획금액이 가장 많은 어업 ② 종사한 어업의 종류
- 「어선」에 관한 사항(8개 항목)
 - ① 어선명 ② 어업의 종류 ③ 어선의 종류 ④ 선박의 재질 ⑤ 선령
 - ⑥ 톤수 ⑦ 마력수 ⑧ 선원수
- 「양식장 시설규모」에 관한 사항(5개 항목)
 - ① 패류 ② 해조류 ③ 어류 ④ 갑각류 ⑤ 기타 수산동물
- 「어업활동」에 관한 사항(3개 항목)
 - ① 최성어기의 어업종사자 수 ② 조업수역 ③ 해상작업 종사일 수
- 「문화용품 및 가재보유」에 관한 사항(15개 항목)
 - ① 신문 ② 에어컨 ③ 피아노 ④ 비디오 ⑤ 전축(오디오) ⑥ 전자렌지
 - ⑦ 진공청소기 ⑧ 싱크대 ⑨ 개인용 컴퓨터 ⑩ FAX ⑪ 승용차 ⑫ 운반용 트럭
 - ⑬ 오토바이 ⑭ 보일러시설 ⑮ 수도시설

7. 단계별 수행업무

업무내용	일 정	세부수행사항	비 고
가. 조사지침, 조사표류 유인·배부	1999. 10. 2	○ 조사지침(농업, 어업) ○ 조사구 요도 및 가구일람표 ○ 조사표(농업, 어업) ○ 조사 의견 설문서	농수산통계과
나. 시험조사 추진 관련 교육	9.29~10. 1	○ 장소 : 통계청 ○ 대상 : 사회조사과장 및 농수산 팀장	농수산통계과 각 사무소 및 출장소
다. 시험조사구 선정 및 조사담당 공무원 지정	10. 1~10. 5	○ 사무소/출장소당 2개조사구를 유의 선정 ○ 조사구별 조사공무원 및 지도원 지정	농수산통계과 각 사무소 및 출장소
라. 조사원 선발·채용	10. 1~10. 5	○ 각 사무소·출장소별 1인 ○ 채용방법은 세부실시계획 참조 ○ 채용결과는 각 사무소에서 취합하여 105까지 보고	각 사무소 및 출장소
마. 조사원 교육	10. 4~10. 9	○ 각 사무소·출장소별로 실시 ○ 교관 : 농수산팀장	각 사무소 및 출장소
바. 준비조사	10.11~10.13	○ 조사구내 농·어가 확인 ○ 조사구 요도 및 가구일람표 작성	조사원
사. 본조사	10.14~10.27	○ 조사구 농가 방문, 조사	조사원
아. 조사원 간담회	10.20~10.27	○ 현지 지도방문시 조사원 및 지도원 면담	농수산통계과
자. 조사표류 제출	10.28~11. 5	○ 조사표, 조사구 요도 및 가구일람표 등 일체를 농수산통계과에 제출	각 사무소 및 출장소
차. 조사의견 수집·검토	10.28~11. 5	○ 현지 조사자 의견 수집	각 사무소 및 출장소, 농수산통계과
카. 조사표 검토 및 문제점 도출	11. 6~11.20	○ 조사표 기재내용 검토 및 오류원인 분석	농수산통계과
타. 조사결과 분석	11.20~11.30	○ 문제점 및 개선대책, 향후 추진방향 등 설정	농수산통계과

Ⅲ. 조사대상 및 용어정의

1. 조사대상

- 시험조사구내에 거주하면서 해면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모든 어가

2. 용어의 정의

가. 어업

-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나. 어업가구(어가)

-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조사기준일(10. 1) 직전 1년 동안 1개월(30일) 이상 해면 또는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단, 시험조사에서는 내수면어가조사 제외)

※ 어가에 포함되는 유형

- (1) 자기소유 또는 자기책임하에 빌린 어선, 어망, 어구나 양식장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
- (2) 자기소유의 어망, 어구를 가지고 타인의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하되, 어획물은 자기의 책임하에 처리하는 가구
- (3) 두사람 이상이 어선, 어망, 어구 등을 상호간에 제공하여 협업으로 조업하고 있는 각 가구
- (4) 허가, 면허, 신고 등의 유무에 관계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
- (5) 법인회사의 대표자가 회사명의로 경영하는 어업이외에 별도로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법인회사명의로 경영하는 어업은 제외)

다. 전업어가

- 조사기준일 직전 1년 동안 가구수입이 어업수입뿐인 어가

라. 제1종 겸업어가

- 조사기준일 직전 1년 동안 가구수입 중 어업수입이 50% 이상인 어가

마. 제2종 겸업어가

- 조사기준일 직전 1년 동안 가구수입 중 어업수입이 50% 미만 어가
- ※ 돈벌이를 위한 어업이외의 일에 대한 수입에는 이전수입과 재산수입은 제외
 - 이전수입 : 사례금, 축·조의금, 학자금, 보조금, 퇴직금, 피해보상금, 자녀로부터의 송금 등
 - 재산수입 : 자산(토지, 건물, 어선 등)매각대금, 유가증권(주식, 국공채 등)매각대금, 예·적금 인출액, 차입금 등

바. 어선사용가구

- 조사기준일 직전 1년 동안에 어선(동력선이나 무동력선)을 주(主)로 사용하여 자기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

사. 어선비사용가구

- 조사기준일 직전 1년 동안에 어선을 주(主)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어업을 경영하는 가구

아. 양식어업가구

- 조사기준일 직전 1년 동안에 주로 연안어장에서 양식어업(어류, 갑각류, 패류, 해조류, 기타 수산동식물 등)을 경영하는 가구(양식어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양식채취선은 양식어업가구에 포함)

자. 경영주

- 경영주란 어업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

차. 가구원

- 조사기준일 현재 어업가구주와 1개월 이상 같이 살았거나, 1개월은 안되어도 앞으로 1개월 이상 같이 살게 될 사람

카. 어업종사자

- 조사기준일 현재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조사기준일 직전 1년 동안에 1개월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종사자에 포함되는 유형】

- (1) 조개류를 캐는 작업(포패)에 종사하는 사람
- (2) 자연산 미역 등 해조류를 따는 작업(채조)에 종사하는 사람
- (3) 해녀 등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4) 어선어업에서 어업활동에 참가하는 선장, 어로장, 항해사, 기관사, 선상가공원 등 모든 선원
- (5) 양식어업의 시설설치, 철거, 채묘, 어장감시에 종사하는 사람
- (6) 정치망 어업에서는 망의 설치 및 대체작업, 기타 해상의 모든 작업과 어장감시에 종사하는 사람
- (7) 지인망 어업에서는 해상의 모든 작업과 육상에서 지인망을 끄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어업종사자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 (1) 육상에서 어획물의 운반작업에만 종사하는 사람
- (2) 육상에서 멸치, 오징어, 미역, 김 등 어류 및 해조류의 건조작업에만 종사하는 사람
- (3) 육상에서 진주핵을 넣는 작업 및 조개껍질 벗기는 작업에만 종사하는 사람
- (4) 육상에서 어선, 어구 등의 수리작업에만 종사하는 사람
- (5) 자가소비나 오락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사람

IV. 조사원 수행사항

1. 조사원 교육참석 : 10. 4. ~ 10. 9. 중 1일

○ 교육장소 : 통계사무소 또는 출장소

※ 조사지침을 한번의 교육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받은 내용을 복습한다.

2. 조사용품 수령

○ 농업총조사 조사표(A4, A3), 어업총조사 조사표(A4), 조사구요도, 가구일람표, 농업총조사 지침서, 어업총조사 지침서, 조사표 표지(A4, A3), 조사원증, 연필, 지우개 등

3. 준비조사 실시 : 10. 11 ~ 10. 13

- 조사구 경계 및 거처 확인
- 농가 및 어가의 확인
- 가구일련번호표(스티커) 부착
- 조사구요도 및 가구일람표 보완·작성

4. 본조사 실시 : 10. 14 ~ 10. 27

- 농·어가를 방문하여 면접·타계식 조사
- ※ 농업총조사는 2종류의 조사표를 격일제로 사용
- 조사표 검토 및 착오사항 보완
- 조사표류 제출

조사구요도 및 가구일람표, 조사표, 조사원증, 조사원 업무일지, 농·어가별 조사항목 현황표, 조사지침서, 기타 관련서류 일체

5. 조사원 업무일지 작성

- 조사기간 중 매일매일의 업무수행 사항을 조사원 업무일지(양식 : 부록)에 상세히 기록하고, 매 3일마다 통계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농수산팀장에게 보고한다.

6. 농·어가별 조사항목 현황표 작성

- 조사완료 후 농·어가별로 조사된 항목의 현황표(양식 : 부록)를 작성하여, 통계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농수산팀장에게 제출한다.

V. 준비조사

1. 준비조사 목적

- 표본조사구의 경계 확인 및 조사순서의 결정(조사구요도 작성)으로 대상 농가 및 어가의 누락·중복을 방지한다.
- 표본조사구내 가구일람표를 작성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농가, 어가, 비농·비어가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대상 가구를 확정한다.

2. 조사구요도 및 가구일람표 작성

- 조사구 경계 및 거처를 확인한다.
 - 조사원별로 담당 조사구의 '95.농·어업총조사시 조사구요도 및 가구일람표를 지참하고 현지를 방문한다.
 - 조사구요도상에 표시된 경계를 상세히 확인하고, '95년 농·어업총조사 이후 변동 또는 누락된 도로, 지형지물, 거처 등을 확인한다.
 - ※ 기존 조사구요도가 조사구의 경계구분이 어렵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할 통계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관련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 농가, 어가 여부를 확인한다.
 - '95.농·어업총조사시의 가구일람표 및 조사구요도를 참고하고, 조사구내 리·통장, 독농가 등을 대상으로 가구별 농·어업활동 여부를 파악하여 농가 및 어가에 해당하는 가구를 확인한다.
 - 농가 및 어가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는 가구구분의 앞란(농가는 경지 300평 이상, 어가는 동력선 사용)부터 해당하는 순서로 한 칸에만 “○” 표 한다.
- 가구일련번호표(스티커)를 부착한다.
 - 농·어가로 확인 된 가구의 대문 또는 주 출입문 상단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조사 대상 농·어가임을 표시한다.
- 조사구요도 및 가구일람표를 보완·작성한다.
 - 앞에서 확인한 조사구의 경계 및 거처 중 변동된 사항을 현지에서 기존조사구요도에 우선 보완한다.
 - 현지에서 기존 조사구요도에 보완한 내용을 포함하여 새로운 요도 및 가구일람표를 작성한다.

가구일람표 보완·작성

- 집(거처)이 철거되었을 경우에는 거처번호부터 비고란까지 적색으로 <=> 표시하고, 집을 새로 지었을 때에는 해당 인구주택조사구의 가구일람표 맨 끝번 거처번호의 가구번호에 이어 일련번호를 기입하고 농가 및 어가 여부를 확인한다.
- 가구가 다른곳으로 이사하여 빈집으로 있을 때는 가구번호부터 비고란까지 적색으로 <=> 표시한다.
- 기존의 가구가 이사를 가고 새로운 가구가 이사온 경우에는 가구주 성명부터 농·어가일련번호까지 적색으로 <=> 표시하고, 새로 이사온 가구는 가구일람표 맨 끝란에 이어 기존의 거처번호, 가구번호, 주소를 이기함과 동시에 가구현황을 조사 기입한다.
- 한 집에(동일거처) 1가구가 살다가 셋 방 등으로 새로운 가구의 전입이 있어 가구수가 증가되었을 때에는 해당 가구일람표 맨 끝란에, 거처번호의 경우 동일 거처번호를 기입하고, 가구번호는 맨 끝번호에 연결하여 부여한다.
- 거처나 가구에 대한 변동이 있을 시에는 비고란에 철거, 신축, 전출, 전입 등의 사유를 기입한다

조사구요도 보완·작성

- 농·어가 확인이 완료되면 우선 가구일람표를 정비하고 농가 및 어가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조사구 요도를 보완 작성한다.
- 집(거처)이 철거되었을 경우에는 거처표시 (□)에 붉은색으로 ✕ 표를 하고, 집이 새로 발견(신축 등)되었을 때에는 신축위치에 □ 표시를 한 후, 가구일람표상에 부여한 거처번호를 적어 넣는다.
- 거처표시가 수정·보완되면 가구일람표상에 부여된 농가 및 어가일련번호를 거처(집)번호위에 붉은색으로 기재한다. 이때, 농가 및 어가일련번호는 가구일람표상의 농가 및 어가일련번호와 같아야 한다.
- 어촌지역의 어업조사구에서 한 가구가 어가와 농가로 동시에 해당될 경우, 어가일련번호는 거처(집)번호 위에 기재하고, 농가일련번호는 어가일련번호 오른쪽 옆의 ()안에 기재한다.

Ⅵ. 본 조 사

VI. 본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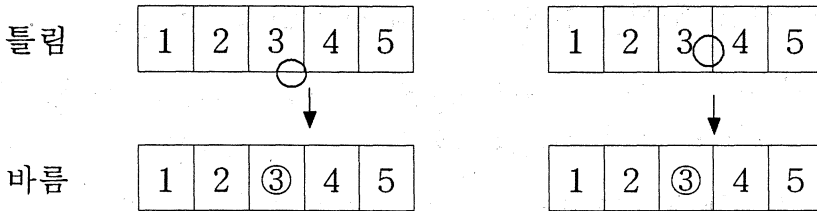
1. 조사원 수칙

- 조사기간 중에는 조사요령 교육에 참석하고 준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어업총조사 시험조사 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한다.
 - 조사원으로 위촉받은 자가 필히 직접 조사하여야 하며, 대리조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특별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담당지도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다른 사람으로 교체, 조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된다.
 - 조사일정에 따라 농가나 어가를 방문하여 조사할 때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 조사대상 가구에서 거부감이 없도록 한다.
 - 응답자는 가능한 한 경영주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농가나 어가를 방문 조사할 때는 방문목적과 농·어업총조사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고 공손하게 질문하여 응답자로 하여금 명랑하게 사실대로 답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조사 이외의 다른 질문은 일체하지 말 것이며, 응답자가 조사와 관계없는 화제로 시간을 낭비하게 될 때에는 요령 있게 화제를 돌려 신속히 조사를 끝내도록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재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 경영주는 외출하고 남은 가족이 조사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할 때
 - 방문한 가구가 혼사나 상을 당하여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집안이 우환, 싸움등 불유쾌한 환경에 처해 있거나 응답자가 술에 취하여 옳은 답변을 기대할 수 없을 때
 - 응답자가 무조건 답변을 거부할 때
- ※ 재방문을 요할 때에는 가구일람표의 해당가구 비고란에 부재나 재방문의 표시를 하였다가 다시 방문하여 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조사표 기입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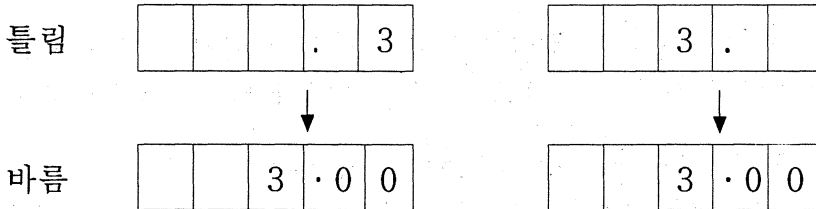
- (1) 조사표 기입은 먼저 연필로 기재한 후 조사표상의 조사내용을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볼펜이나 만년필로 깨끗이 기입한다.
- (2) 모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하되, 정자(正字)로 분명히 나타낸다.
- (3) 단위 미만이 없는 란은 지정된 단위까지 사사오입하여 기입한다
 <보기> 5.5 → 6 5.2 → 5
- (4) 숫자기입이 아니고 “○” 표하는 경우는 해당란 중앙에 분명히 표시한다.

<보기>



- (5) 소숫점 이하까지 기재토록 된 조사란은 자릿수를 지켜 단위미만까지 명확히 기재한다.

<보기> 어선 3톤



- (6) 조사표에 이미 고정시켜 놓은 단위(kg, 평, m²)는 그대로 적용하여 기입하여야 하며, 임의로 단위를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 (7) 조사표에 기입 중이거나 기입 후에는 전후관계의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를 항상 유의하여야 한다.

3. 조사표 기입요령

조사표 표지

■ 관리사항

관리 사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어업 조사구 번호	어가 일련번호	인구주택 조사구번호

- 시도, 시군구, 읍면동 : 해당 행정구역 명칭을 기입하며, 아래 파란색란은 '95.농어업총조사시의 분류부호를 기입한다.
- 어업조사구번호 : '95.어업총조사시의 해당번호를 기입한다.
- 어가일련번호 : 가구일람표상에 기재된 어가일련번호를 기입한다.
- 인구주택조사구번호 : '95.인구주택총조사시의 조사구번호를 기입한다.

■ 어가의 주된 어업형태

어가의 주된 어업형태			
동력선 사 용	무동력선 사 용	양식어업	어선비사용
1	2	3	4

- 조사대상 어가의 어업수입이 가장 많은 주(主)된 어업형태를 물어, 그 부호 하나에만 “○” 표 한다

※ 용어정의 및 분류기준

《어업가구(어가)》

가구주나 가구원 중에서 조사기준일 직전 1년 동안에 1개월(30일) 이상 판매를 목적으로 해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

《어업형태》

- 동력선사용 : 가구의 어업수입 중 동력선을 사용하여 얻는 수입이 가장 많은 경우
- 무동력선사용 : 가구의 어업수입 중 무동력선을 사용하여 얻는 수입이 가장 많은 경우

- 양식어업 : 가구의 어업수입 중 연안어장에서 패류, 해조류, 어류, 갑각류 및 기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을 자영함으로써 얻는 수입이 가장 많은 경우
- 어선비사용 : 가구의 어업수입 중 타인의 어선에 승선하여 자기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선을 사용하지 않는 어업을 경영함으로써 얻는 수입이 가장 많은 경우(채포, 채취 등)

[유의사항]

- 동력선과 무동력선을 함께 사용할 경우, 주(主)로 사용한 어선이 동력선이라면 『동력선사용』에만 “○” 표. 다만, 무동력선의 연간 조업일수가 많거나 연간 소득이 많을 경우에는 『무동력선사용』에 “○” 표.
 - 동력선과 무동력선을 함께 사용하더라도 양식어업 수입이 어로어업 수입보다 많을 경우에는 양식어업으로 분류
 - 전진만 되고 후진이 되지 않는 선박(준동력선)도 동력선에 포함
 - 양식업가구에서 양식을 위한 수단으로 무동력선(양식채취선)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양식어업으로 분류
 - “어선사용가구”와 “어선비사용가구”의 구분
 - 어선사용가구 : 어선의 소유 및 임차와 관계없이 자기책임하에 어선사용을 주(主)로 하여 어로어업을 경영하는 가구
 - 어선비사용가구 : 자기책임하에 어선사용을 주(主)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어업을 경영하는 가구.
- <예> 타인의 어선에 승선하여 자기의 어구로 어업을 경영하여, 그 수입을 선주와 일정비율로 분배하는 가구 등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어업 등 수동식방법으로 조업하는 경우 등)

■ 응답자 및 조사자 표시

조 사 일	1999년	10월	일
응답자	☎ ()	-	성명 : (인)
조사자	직		성명 : (인)
검토자	직		성명 : (인)

- 조사일에는 실제 방문조사한 날짜를 기입하고, 응답자의 전화번호와 성명은 조사 후의 질의사항 등을 위하여 반드시 기입한다.
- 조사자는 어가를 방문조사한 조사원 성명을 기입하고, 검토자란은 비워둔다.

1. 어업가구원 상황

■ 가구원수

가 구 원 수	합 계			
	만 15세 이상	남		
		여		
	만 15세 미만	남		
여				

【묻는 법】

10월 1일 현재 댁에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분입니까?

【작성요령】

- 만 15세 이상과 15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남·여별 인원수를 기입하고, 모두 합하여 합계란에 기입한다.
- 조사대상 가구원은 주민등록이나 혈연과는 관계없이, 조사기준일(10월1일) 현재 한 집에서 1개월 이상 같이 살았거나, 앞으로 계속 1개월 이상 같이 살게 될 사람을 말한다.
 - 10월 1일 군에서 제대한 아들이 앞으로 계속 1개월 이상 같이 살게 될 예정이라면, 이 사람은 가구원에 포함된다.
 - 고용인은 어업을 하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하며, 10월 1일 현재 어가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만 조사한다.
 - ※ 어업이외의 일을 위해 고용한 고용인과 하숙생은 가구원에서 제외한다.
 - 가족 중에서 일시적으로 집을 떠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포함하고, 1개월 이상이면 제외한다.
 - 단, 병원입원, 여행, 출장, 출어 중인 가족은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한다.
- 가구원 조사에서 제외되기 쉬운 다음 가구원에 대하여 특히 유의한다.
 - ① 가정부 ② 갓난아기 ③ 노인 ④ 여행 또는 출장 중인 가족
 - ⑤ 어업관련 고용인
- 가구원의 합계란은 가구원 성명란의 마지막 번호와 일치하여야 한다.

■ 가구원 성명 및 경영주와의 관계

가 구 원 성 명 및 경 영 주 와 의 관 계 (경영주, 배우자, 자녀, 부, 모, 기타가족, 고용인 등으로 기입)	① 성 명 관 계	(1)	(2)	(3)	(4)	(5)	(6)	(7)	(8)
		경영주							

【묻는 법】

현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본들의 성명을 경영주부터 말씀해 주시고, 경영주와는 어떤 관계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작성요령】

- 첫번째 란(1)에 경영주 성명을 기입한 후, 다음 란(2)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가족들의 성명과 경영주와의 관계를 먼저 기입한 후 동거인을 기입한다.
- 경영주와의 관계는 가족인 경우 부, 모, 배우자, 자녀, 손자 등으로 기입하고, 가족이 아닌 경우는 고용인 등으로 기입한다.
- 앞의 가구원수란과 대조하여 누락여부를 검토한다.

※ 경영주란

가구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에 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어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만 나 이

만 나이(1999.10.1기준)	②				
-------------------	---	--	--	--	--

【묻는 법】

○○는 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작성요령】

- 전 가구원에 대한 나이를 만 나이로 조사 기입한다
 - 만 나이를 모를 때에는 사실상 연령에서 생일이 10월 1일 이후면 2살을 감하여 기입하고, 1월 1일에서 9월 30일 사이면 1살을 감하여 기입한다.
 - '98. 10. 1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는 0세로 기입한다.
- ※ 이 지침서의 맨 마지막 쪽에 있는 연령조건표 참조

■ 성 별

성 별	남	③	1
	여		2

【묻는 법】

○○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작성요령】

- 전 가구원의 성별을 물어서, 남자는 1에, 여자는 2에 “○”표 한다
- 성별조사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경영주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동거인에 대해서도 성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여기서 조사된 남녀의 수는 앞 가구원수란의 남녀의 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 혼인상태

혼 인	기 혼	④	1
	미 혼		2

※ ④~⑪까지는 15세 이상의 가구원만 조사한다

【묻는 법】

○○는 결혼을 하였습니다니까? 미혼입니까?

【작성요령】

- 결혼을 하였다면 1에 “○”표 하고, 미혼이면 2에 “○”표 한다.
- 혼인여부는 사실상의 혼인상태를 조사한다.
- 혼인상태를 조사할 때는 응답자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 최종학력

최종학력	초 등 학 교	5	1
	중 학 교		2
	고 등 학 교		3
	전 문 대 학		4
	대 학 교 이 상		5
	안 다 녀 었 음		6

【묻는 법】

○○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작성요령】

- 학교를 다녔다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이상의 해당번호 하나에 “○” 표 한다.
- 학교를 안다녔다면
6번에 “○” 표 한다.

[유의사항]

- 여기서 조사하는 학력은 재학생 및 졸업자를 포함하여 조사하며, 해당란에 “○” 표한다.
 - 중학교 재학생 : 중학교란에 “○” 표
 - 고등학교 재학생 : 고등학교란에 “○” 표
 - 전문대학 재학생 : 전문대학란에 “○” 표
 - 대학교 재학생 : 대학교이상란에 “○” 표
- 구(舊)학제는 현(現)학제에 준하여, 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 공민학교는 초등학교로 조사한다.
 - 초등학교 : 보통학교, 공민학교
 - 중 학교 : 고등소학교, 고등보통학교,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 구제(舊制) 고등학교
 - 전문대학 : 구제(舊制) 예과, 전문학교
- 3군 사관학교 졸업생은 대졸에 포함시킨다.
-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는 국내학력에 준하여 표시한다.
- 검정고시 합격자는 상당하는 정규학교의 학력으로 인정하여 기재한다.

■ 주로 종사한 분야

지난 1년간 (’98.10.1~’99.9.30)	주 종 사 한 분 야	어	업	⑥	1
		어 업 이 외 의 일			2
		학	생		3
		기 타(환자,무직자 등)			4

【묻는 법】

○○는 지난 1년간에 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종사기간이 가장 많았던 것 하나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작성요령】

- 어업(1)부터 기타(4)까지 하나하나 물어서 주로 종사한 분야의 해당번호 하나에만 “○” 표를 한다.
-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은 누구든지 이 란(⑥란)에 반드시 “○” 표가 되어야 한다.
- 한 사람이 두가지 이상 해당될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구분 표시한다.
 - 가. 종사기간이 긴 쪽에 “○” 표를 한다.
 - 나. 기간이 비슷할 때는 수입이 많은 쪽에 “○” 표를 한다.
- ⑥란의 1에 “○” 표가 있을 때는 ⑦란 3, 4, 5 중 하나와 ⑧, ⑨란에 각각 “○” 표가 있어야 한다.
- ⑥란의 2에 “○” 가 있으면 반드시 ⑩, ⑪란에 각각 “○” 표가 있어야 한다.
 - ※ 학생 : 정규학교는 물론 기술학교, 학원 등도 포함시킨다.
- ⑥란의 기타(4)는 가사, 환자, 무직자 등이다.

■ 어업에 종사

● 어업에 종사한 기간

		경영주	배우자	자녀
어업에 종사한 기간	1 개 월 미 만	1	①	1
	1 ~ 2 개 월	2	2	2
	2 ~ 3 개 월	3	3	③
	3 개 월 이 상	④	4	4

【묻는 법】

○○는 지난 1년 동안 어업에 종사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작성요령】

- 지난 1년간 어업에 종사한 기간을 말하며, 어업에 종사한 가구원에 대하여 1개월 미만, 1~2개월, 2~3개월, 3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 표를 한다.

- 만 15세이상 가구원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 1~2개월은 1개월이상 2개월미만을 말하며, 2~3개월은 2개월이상 3개월미만을 말함
-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실제로 일한 날짜의 누계(연)일수를 계산하여 조사한다.
- 자기집 어업뿐만 아니라, 남의집 어업에 종사한 기간도 포함한다.

(예 : “경영주”는 지난 1년간 3개월 이상 어업에 종사했고, “처”는 가사를 돌보면서 1개월 미만 양식장에 나가서 일하고, “아들”은 2개월 동안 어업에 종사한 경우
→ 앞면 조사표의 “○” 표)

● 어업에 종사한 형태

어업에 종사한 형태	자기집 어업	⑧	1
	남의집 어업		2
	자기집과 남의집 어업		③

【묻는 법】

○○는 지난 1년동안 어느 형태로 어업에 종사했습니까?

【작성요령】

- 지난 1년간에 어업에 종사하면서 자기집 어업에만 종사했으면 “자기집 어업”, 남의 집 어업에만 종사했으면 “남의집 어업”, 자기집 어업에도 종사하고 남의집 어업에도 종사했으면 “자기집과 남의집 어업”란의 번호에 “○” 표를 한다.

(예 : 자기양식장을 경영하면서 이웃 양식장시설에 품팔이를 했을 경우는 3에 해당
→ 위 조사표의 “○” 표)

● 어업에 주로 종사한 분야

			경영주	배우자
어업에 주로 종사한 분야	어선어업		①	1
	양식어업		2	2
	포획·채취 (자연산)	해녀어업	3	③
		기타	4	4

【묻는 법】

○○는 지난 1년 동안 어업분야 중에서 주로 종사한 분야는 무엇입니까?

【작성요령】

- 만 15세이상 가구원에 대해서만 조사한다.
- 지난 1년 동안에 가구원 개개인이 종사한 어업 중 다음 분류에 의거하여 종사일수가 가장 많았던 곳에 “○” 표를 한다.

(예 : 경영주는 어선을 가지고 어로활동을 하고, 처는 해녀로서 자연산 조개를 따다면 경영주는 1, 처는 3에 해당 → 위 조사표의 “○” 표)

- ☞ 어선어업 : 해상에서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 ☞ 양식어업 : 연안에서 인공적 시설을 갖추어 패류, 해조류, 어류, 갑각류 또는 기타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를 말한다.
- ☞ 포획, 채취(자연산) : 연안에서 자연산 패류, 해조류, 어류, 갑각류 또는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경우를 말한다.

■ 어업이외의 일에 종사

● 종사한 기간

종사한 기간	1 개 월 미 만	⑩	1
	1 ~ 2 개 월		2
	2 ~ 3 개 월		3
	3 개 월 이 상		4

【묻는 법】

○○는 지난 1년 동안 어업이외의 일에 돈벌이를 위해 종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종사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작성요령】

- 지난 1년간 어업이외의 일에 돈벌이를 위해 종사한 기간을 조사하며, 가구원 중 어업에 종사하면서 어업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도 해당란에 “○” 표를 한다.
- 어업이외의 일에 종사한다는 것은 수입(돈벌이)을 얻기 위하여 어업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일한 것을 말한다.

● 어업이외에 주로 종사한 분야

어업이외 주로 종사한 분야	회 사 원	①	1
	상 업		2
	농 업		3
	기 타		4

【묻는 법】

○○는 지난 1년 동안 어업이외의 일 중 주로 어떤 분야에 종사했습니까

【작성요령】

- 지난 1년간 돈벌이를 위해 어업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에 대해 어떠한 일인지 분야별 부호를 기입(1~4 중 하나)한다.
- ①란의 2에 “○” 표된 가구원은 반드시 조사한다
- 회사원 : 회사 또는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불문한다.(사무직, 생산직, 공무원 등)

- 상 업 : 가족단위로 경영하는 장사를 말하며, 여기에 고용된 판매원도 포함된다.
(구멍가게, 시장의 각종장사 등)
- 농 업 : 농작물 재배, 가축·가금의 사육, 양잠, 양봉 등의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 기 타 : 리, 통, 반장, 수위, 운수업, 주유업, 도정업, 소개업, 건설업(건축공사장 인부) 등과 농수산가공 등의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어업가구의 성격

■ 어업이외의 일에 종사

가. 전·겸업 구분

어업수입뿐이다(전업어가)	201
어업수입이 더 많다(1종 겸업어가)	202
어업수입이 더 적다(2종 겸업어가)	203

【묻는 법】

지난 1년 동안 가구전체의 수입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작성요령】

- 가구원 중 ⑥란의 2와 ⑩란의 2, 3, 4에 “○” 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한다
- 어가전체로 보아 어업이외 수입이 전혀 없고 어업수입뿐인 가구는 201에 “○” 표를 한다.
- 어업수입이 어업이외 수입 보다 많은 어가는 202에 “○” 표.
- 어업수입이 어업이외 수입 보다 적은 어가는 203에 “○” 표.
- 어업수입과 어업이외 수입이 비슷할 때는 종사기간이 길고, 노력을 많이 경주한 쪽에 “○” 표를 한다.

- ㉞란의 1(어업), 3(학생), 4(기타)에 ○표가 있더라도, 어업이외의 일에 종사한 가구원이 있으면 조사되어야 한다.
- 어업수입과 비교되는 어업이외 수입에는 농업수입, 상공서비스 등 기타 겸업 수입, 임금, 급여 등은 포함되나, 다음의 이전수입과 재산수입은 제외된다.
 - 이전수입 : 사례금, 축·조의금, 학자금, 보조금, 퇴직금, 피해보상금, 가족으로부터의 송금 등
 - 재산수입 : 자산(토지, 건물, 어선 등) 매각대금, 유가증권(주식, 국공채) 매각대금, 예금·적금 인출액, 차입금 등

나. 겸업가구의 어업이외 주종사 분야

회 사 원	211
상 업	212
농 업	213
기 타	214

【묻는 법】

지난 1년 동안 어업이외에 주로 종사한 분야는 가구전체를 보아 어느 것입니까?

【작성요령】

- 앞의 “가” 항(전·겸업 구분) 202 또는 203에 “○” 표된 어가는 반드시 이 란의 211~214 중 하나에 “○” 표를 해야 한다.
- 어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가구는 제외한다.
- ㉞란의 2(어업이외의 일)에 “○” 표가 있으면 반드시 조사되어야 하며,
- 어업수입과 어업이외수입이 비슷할 때는 종사기간이 길고, 노력을 많이 경주한 쪽에 “○” 표시한다.

< 어업종사자 >

- 만 15세 이상의 가구원 중 해면에서 어로 또는 양식작업에 지난 1년 동안 1개월 이상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 조개류를 캐는 작업(포패)에 종사하는 사람
 - 자연산 미역 등 해조류를 따는 작업(채조)에 종사하는 사람
 - 해녀 등 잠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선어업에서는 어업생산활동에 참가한 선장, 어로장, 항해사, 기관사, 선상가공원 등 선원 전부
 - 양식업의 시설설치, 철거, 채묘, 어장감시에 종사하는 사람
 - 정치망 어업에서는 망의 설치 및 대체작업, 기타 해상의 모든 작업과 어장감시에 종사하는 사람
 - 지인망 어업에서는 해상의 모든 작업과 육상에서 지인망을 끄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어업종사자에서 제외되는 유형
 - 육상에서 어획물의 운반작업에만 종사하는 사람
 - 육상에서 멸치, 오징어, 미역, 김 등 어류 및 해조류의 건조작업에만 종사하는 사람
 - 육상에서 진주핵을 넣는 작업 및 조개껍질 벗기는 작업에만 종사하는 사람
 - 육상에서 어선, 어구 등의 수리작업에만 종사하는 사람
 - 자가소비나 오락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사람

3. 어업의 종류

가. 어획물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어업종류

300	부호		
-----	----	--	--

【묻는 법】

지난 1년간에 경영한 어업종류 중 어획물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어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작성요령】

- 어획물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어업의 종류 부호를 조사표 “나”의 표에서 골라, 하나만 기입한다.

나. 경영한 모든 종류의 어업

【묻는 법】

지난 1년간에 경영한 모든 종류의 어업을 뺀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어업의 종류		부호	
원양어업	원양연승	301	
	원양트롤	302	
	원양채낚기	303	
	기타원양	304	
연근해어업	저인망	대형트롤	305
		동해구트롤	306
			307
			308

- 지난 1년간 경영한 어업의 모든 종류를 물어서, 해당 부호에 “○” 표를 한다.

[유의사항]

- 어업의 종류를 모를 경우에는 다음의 [어업의 종류] 란을 참고한다.
- 어획금액이 가장 많은 어업이란 지난 1년간의 어획금액(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어획량(판매량)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

[어업의 종류]

○ 원양어업의 종류

종 류	부호	정 의
원 양 연 승	301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원 양 트 롤	302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원 양 채 낚 기	303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기타 원양어업	304	위의 원양어업 이외의 원양에서 조업하는 어업

○ 저인망어업의 종류

종 류	부호	정 의
대 형 트 롤	305	총 톤수 70톤이상 14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 전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동 해 구 트 롤	306	총 톤수 20톤이상 6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전 개판을 장치한 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대형기선저인망	307	총 톤수 60톤이상 14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중형기선저인망 (동해구)	308	총 톤수 20톤이상 6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강원도, 경상북도의 어로구역)
중형기선저인망 (서남해구)	309	총 톤수 20톤이상 6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의 어로구역)
근 해 형 망	310	총 톤수 2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연 안 형 망	311	무동력어선에 의하여 형망을 사용하여 패류를 포획하는 어업
연 안 조 망	312	총 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망구에 막대를 설치한 조망을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하거나, 무동력선에 의하여 타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선망어업의 종류

종 류	부호	정 의
대 형 선 망	313	총 톤수 50톤이상 13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소 형 선 망	314	총 톤수 8톤이상 2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연 안 선 망	315	무동력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선망, 석조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부망어업의 종류

종 류	부호	정 의
근 해 안 강 망	316	총 톤수 8톤이상 9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연 안 안 강 망	317	총 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안강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분 기 초 망	318	무동력선 또는 총 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기 타 부 망	319	기타어선에 의하여 분기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자망어업의 종류

종 류	부호	정 의
근해유자망	320	총 톤수 8톤이상 7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망 또는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연안유자망	321	무동력선 또는 총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유망 또는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인망어업의 종류

종 류	부호	정 의
기선권형망	322	총 톤수 4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인망(저인망 제외)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기선선인망과 동일함

○ 채낚기 어업의 종류

종 류	부호	정 의
근해채낚기	323	총 톤수 8톤이상 9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 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연안채낚기	324	총 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외줄낚시 또는 채낚기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연승어업의 종류

종 류	부호	정 의
근 해 연 승	325	총 톤수 8톤이상 7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연 안 연 승	326	무동력선 또는 총 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주낙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통발어업의 종류

종 류	부호	정 의
근 해 통 발	327	총 톤수 8톤이상 70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 또는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연 안 통 발	328	무동력선 또는 총 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통발 또는 문어단지를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정치망 어업의 종류

종 류	부호	정 의
정 치 망	329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부망, 대모방, 개량식대모방, 낙방, 각방, 팔각망, 소대방 및 죽방렴 등의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 잠수기어업의 종류

종 류	부 호	정 의
잠수기어업	330	총 톤수 8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잠수기를 설치하여 패류 등의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 공동어업, 구획어업, 신고 및 기타 연근해어업의 종류

종 류	부 호	정 의
공동어업	패 류 채 취 331	연안의 최간조사의 평균수심 10m이내(강원, 경북 및 제주도는 15m이내)의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업
	해 조 류 채 취 332	
	정착성수산동물 포획, 채취 333	
구획어업	정 치 성 구 획 334	무동력선 또는 총톤수 5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일정한 수역에서 지인망, 선인망, 호망, 건망, 건간망, 주목망, 승망, 삼각망, 부망, 장망, 낭장망, 해선망, 인강망 등의 어구를 설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
	이 동 성 구 획 335	무동력선 또는 총톤수 3톤미만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일정한 수역의 범위를 정하여 그 수역범위 안에서 수조망, 문어단지, 형망 또는 새우조망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어업
신 고 어 업	336	면허어업, 허가어업, 시험 또는 교습어업외의 어업으로서 외줄낙시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투망어업, 손꽂치어업 또는 육상해조류 종묘생산어업 등
기 타 연 근 해 어 업	337	위의 연근해어업중 어느 것에도 분류되지 않는 어업

○ 천해양식어업의 종류

종 류		부호	정 의
패 류	굴	338	일정한 해면을 구획하여 살포식, 투석식 또는 건홍식 방법으로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 기타 패류 : 전복, 진주조개 등
	고 막 류	339	
	바 지 락	340	
	피 조 개	341	
	가 리 비	342	
	홍 합	343	
	동 죽	344	
	기타패류	345	
해조류	김	346	일정한 해면을 구획하여 건홍식, 수하식 또는 투석식 방법으로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 ※ 기타 해조류 : 모자반, 청각, 파래, 매생이 등
	미 역	347	
	다 시 마	348	
	툇	349	
	기타해조류	350	
어 류	방 어	351	일정한 해면을 구획하여 가두리식 또는 축제식 방법으로 어류를 양식하는 어업 ※ 기타 어류 : 농어, 송어, 능성어, 복어 등
	넙 치	352	
	돔 류	353	
	조피볼락	354	
	기타어류	355	
갑각류	대 하	356	일정한 해면을 구획하여 가두리식 또는 축제식 방법으로 갑각류를 양식하는 어업
	보리새우	357	
	기타갑각류	358	
기 타 수 산 동 물	우렁챙이	359	일정한 해면을 구획하여 살포식 또는 수하식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어업 ※ 기타 : 문어, 해삼, 성게, 갯지렁이 등
	미 더 덕	360	
	기 타	361	

○ 종묘생산어업의 종류

종 류		부호	정 의
육상종묘생산 어 업	어 류	362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수조식 또는 옥 내 배양식 방법으로 어류 등 수산동물의 종묘 를 생산하는 어업 ※ 기타 : 해조류
	패 류	363	
	기 타	364	
해상종묘생산 어 업	어 류	365	해면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수하식, 간이수하 식 또는 펫목식 방법으로 어류 등 수산동물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 기타 : 우렁챙이 등
	패 류	366	
	기 타	367	

4. 어선 및 선원 상황

■ 어선 상황 <예시>

없음(V표)	401		어업의 종류		종류			선박재질			선령(년)	톤 수					마력수				
	어선명	번호	동력	무동력	강조	목조	F R P	만	천	백		십	일	단위미만	만	천	백	십	일		
음(V표)	주어선 원진1호	01	①	2	①	2	3	1	0				5	0	0	0		2	0	0	
	원진2호	02	①	2	1	②	3	1	2				3	5	1	5		1	5	0	
	원진3호	03	1	②	1	②	3		5				1	0	2	0		1	0	0	
		04																			
		05																			
		06																			
		07																			
		08																			
	계:(3)척	99			2	1	1	2													

3. 어업의 종류

“나”의 표에서 주로 활동한 어업의 종류 부호를 기입

소수점 이하

【묻는 법】

덱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어선에 대하여 어선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 어가에서 소유 또는 임차 등으로 하여 사용하는 어선이 없으면, 없음(V표)란에 “V” 표를 한다.
- 어선은 조사일 현재 어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선박으로서 자기소유이든, 남의 소유이든, 빌린 것이든 관계없이 조사하고, 주어선 및 부속선(운반선 포함) 등 어업에 사용한 모든 어선을 포함한다.

- 등록 및 신고에 관계없이 실제로 어업에 사용한 어선을 말한다.
 - 선 명 : 어선의 명칭을 기재하며, 어선의 명칭이 없으면 “○○”으로 기재하고 첫번째란은 주어선을 기재한다.
 - 어업의 종류 : 어선별로 주로 어업한 어업의 종류를 조사표의

3.어업의 종류 “나”의 표에서 주로 활동한 어업의 종류 부호를 기입한다.

- 선박의 종류 : 어선형태를 보아 동력, 무동력선 중 해당되는 번호에 “○” 표를 한다. 전진만 되고 후진은 되지 않는 어선(준동력선)도 동력선으로 분류한다.
- 선박의 재질 : 강선, 목선, FRP선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번호에 “○” 표를 한다.
- 톤 수 : 실제 어선의 톤수는 소수점이하 두자리 단위까지 정확히 기재한다.

(3톤의 경우 :

십	일	단위미만	으로 기입)

- 마력수 : 실제 어선의 마력수를 기재하되, 주기관의 마력수를 기재한다. 다만, 마력수가 소수점 이하일 때는 사사오입한다.(보조기관의 마력수는 기재하거나 합산하지 말 것)

[유의사항]

- 어선세력조사는 조사기준일 현재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로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이므로 자기소유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빌려준 어선은 제외한다.
- “주어선”으로 동력선과 무동력선이 있을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동력선 중에는 총 톤수(G/T)가 가장 큰 어선으로 한다.
- 공동소유 등으로 된 어선을 가구별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대표자나 지분이 많은 가구명으로 조사한다.
- 선박의 재질조사는 선박의 외관을 구성하는 주된 재질에 따라 구분한다.

■ 선원 상황

선원 수(원양어업제외)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일반선원		
십	일	십	일	십	일	백	십	일

【묻는 법】

현재 덩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은 어선별로 각각 몇 명입니까?

【작성요령】

- 선원수 : 원양어선의 승선원은 제외하고, 연근해어선의 승선원만 조사한다.
 -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 면허종류별로 선원수를 기재한다.
 - 항해사 : 항해사 면허증을 소지한 선원
 - 기관사 : 기관사 면허증을 소지한 선원
 - 일반선원 :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면허증이 없는 선원은 모두 일반선원으로 간주한다.
- ※ 어선수가 많아 기재할 란이 없으면 별지를 붙여서 조사한다.

【유의사항】

- 자기어선에 가족이 승선하여 어로어업을 할 때는 일반선원으로 기입한다.

5. 양식장 면적

< 예시 >

			없 음 (V표)					대 수(책수)				
			면 적(ha)									
			백	십	일	단위미만						
패 류	살포식	고막류	501		2	0	0	0		2	2	0
		피조개	502									
		바지락	503			1	5	0				
		가리비	504									
		홍 합	505									
		동 죽	506									
		기 타	507									
	투석식	굴	508									

↑
소수점 이하
(자리수에 유의하여 기재)

【묻는 법】

덱에서 현재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양식장의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작성요령】

- 어가에서 직접 경영하는 양식장이 없으면, 없음(V표)란에 “V” 표를 한다.
- 양식장의 면적은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실제 경영하고 있는 면적을 말하므로 반드시 자기 소유일 필요는 없다.
- 조사기준일 현재 경영하고 있는 양식장의 면적을 물었을 때, 대 또는 책수로 대답했을 경우, 대 또는 책수를 해당란에 기재하고 면적(ha)란은 조사가 완료된 후 환산하여 기입한다.
 - 굴 : 대수
 - 김, 파래 : 책수
 - 미역, 다시마, 툇, 우렁챙이 : 대수

- 양식장의 면적 합계는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 1ha당 시설기준
 - 김, 파래 : 지주식 20채, 부류식 25채
 - 미역, 톳, 다시마, 우렁쉥이 등(연승수하식) : 20대
 - 굴 연승수하식 : 20대
 - 굴 뿔목수하식 : 6대
 - 가두리식 : 20조

[유의사항]

- 어촌계의 공동경영 양식장 면적은 공동경영에 실제 참여한 가구별로 배분하여 양식장 면적을 조사한다.
이 때, 어촌계 구성원이 공동경영이외에도 개인 양식장을 경영한 경우는 배분된 면적과 개인 양식장 면적을 합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 공동명의로 양식업 면허가 된 양식장을 실제로는 개인에게 배분하여 양식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각 가구별로 양식장 면적을 조사한다.

<참 고 : 양식방법>

양 식 방 법	정 의
살 포 식	수심 약 40m 이내의 모래와 빨이 섞인 바닥에 서식하는 패류의 종묘를 뿌려서 양식하는 방법 (예 : 바지락, 고막, 피조개 등)
투 석 식	수심 약 30m 이내의 바닥에 약 20kg 정도의 석재를 넣어 패류의 종묘가 부착하여 성장하게 하거나 또는 종묘를 뿌리거나, 석재에서 해조류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양식하는 방법 (예 : 굴, 전복, 소라, 해삼, 우무가사리 등)
건 홍 식	간석지의 바닥에 일정한 크기의 지주목을 박은 후 대나무 등과 그물을 띄워서 양식하는 방법(부류식 포함) (예 : 김, 파래 등)
수 하 식	수면의 표층에 약 100m(1대 또는 1줄)로 설치한 로프 아래에 수직으로 종묘를 넣은 채롱을 달거나, 약 3m 내외의 로프에 종묘를 붙여서 양식하는 방법 (예 : 굴, 홍합, 미역, 가리비, 우렁쉥이 등)
가 두 리 식	부자에 의해 수면에 떠있는 4각의 목재구조물의 돌레를 그물로 막아 해수가 자유로이 드나들고 어류가 나가지 못하도록 시설한 속에서 어류를 양식하는 방법
축 제 식	자연의 해면에 제방을 쌓아서 일정한 수면을 조성하여 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해수를 교환하여 수산동물을 양식하는 방법 (예 : 어류, 새우 등)
육 상 수 조 식	해안가에서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설치한 수조에 관을 연결하여 해수를 취수하여 양식하는 방법 (예 : 어류, 전복 등)

6. 어업 활동

가. 최성어기의 종사자수

【묻는 법】

지난 1년 동안 해상작업에 종사한 사람이 가장 많았을 때의 인원은 몇 명입니까?

601	총수				
-----	----	--	--	--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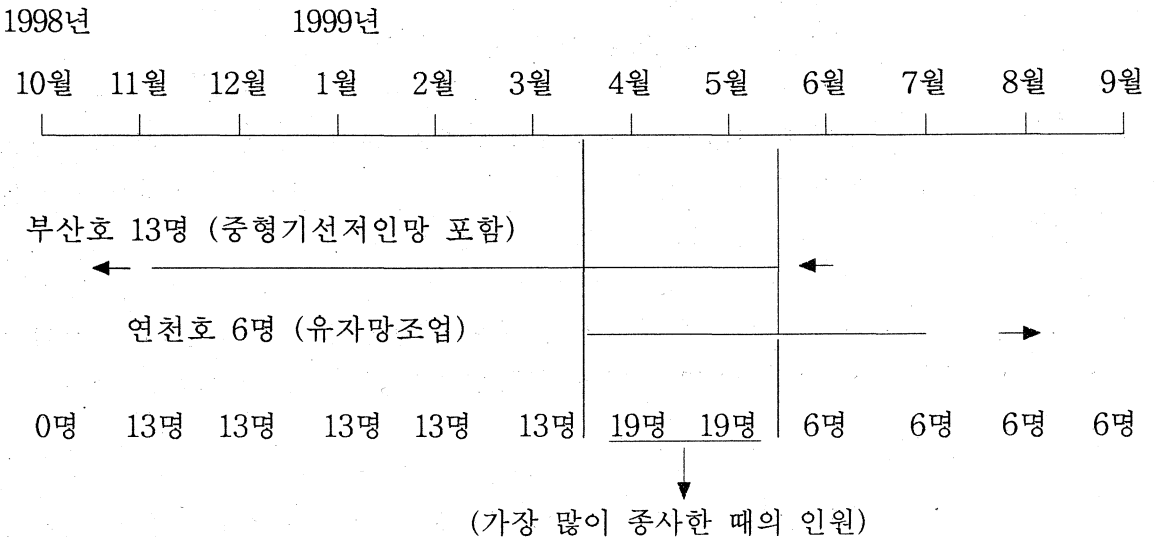
【작성요령】

○ 지난 1년간에 어업활동을 하면서 해상작업에 종사한 사람이 가장 많았을 때의 인원수를 기재한다.

다만, 육상일지라도 해수(바닷물)를 끌어서 이용하는 양식장은 포함한다.

< 예시 >

(월별 어업에 종사한 자)



[유의사항]

- 가족종사자 및 고용인을 포함한다.
- 어로어업, 양식어업 모두 포함한다.
- 어업활동에 따른 해상작업이므로 관광객 안내에 종사한 활동(遊漁)은 해상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상작업 >

해상작업이라는 것은 다음의 작업을 말한다.

- 어선어업 : 어선의 항해, 기관의 조작, 어로활동, 해상가공 등의 작업(모선식 어업의 모선, 그것에 부착한 운반선 등 어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선박의 승선원이 하는 작업을 포함)
- 정치망어업 : 그물의 설치, 교환, 어선의 항해, 어로 및 기타 해상에 있어서의 작업. 특히, 어군의 입망상황 등을 육상에서 살펴보는 것을 포함한다.
- 지인망(地引網)어업 : 어선의 항해, 그물 돌아보기 및 해상에 있어서의 어로 작업과 육상에서의 인망(引網)작업을 포함한다.
- 어선을 사용하지 않고 조개나 해조류를 채취하거나 잠수해서 조개 등을 채집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 해면양식 : 어장의 왕복, 뗏목, 그물 등 양식시설의 설치·해체, 채묘, 어장돌아보기, 수확물 채취 등의 전체 해상작업을 말하고, 육상에서 해수를 끌어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와 같은 해면이외의 육상지(저수지)에서의 작업도 포함한다.

나. 조업한 구역

12해리 이내	611
어업자원 보호구역 내측	612
어업자원 보호구역 외측	613

1해리 : 1,852m

【묻는 법】

댁에서 지난 1년간에 어업을 경영한 구역(원양어업 제외)은 주로 어디입니까?

【작성요령】

- 어업자원 보호구역은 “이승만 라인”을 기준으로 내측, 외측으로 구분한다.
- 주로 어로활동을 한 구역의 부호에 “○” 표를 한다.
(예 : 주로 어로활동을 한 구역 : 12해리 이내)

다. 해상작업 종사일수

【묻는 법】

621	해상작업종사일수			
-----	----------	--	--	--

댁에서 지난 1년 동안 해상작업에 종사한 일수는 얼마나 됩니까?

【작성요령】

- 지난 1년 동안 해상작업에 종사한 일수를 기입한다
- 종사일수는 조업한 어선척수와 종사한 사람의 수에 상관없이 해상에서 작업한 일수를 기입한다.
- 해상작업 종사일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1일 중 몇 회 입·출항하여도 1일로 계산한다.
 - 저녁에 출항해서 아침에 귀항하는 것은 1일로 계산한다.
 - 1항해가 이틀 밤 이상 걸리는 경우, 출항일에서 입항일까지를 통산해서 일수를 계산한다.

7. 문화용품 및 기재보유 현황

		V표	○표
신 문(일간지)		701	1
에	어 콘	702	1
피	아 노	703	1
비	디 오	704	1
전 축 (오 디 오)		705	1
전 자 렌 지		706	1
진 공 청 소 기		707	1
싱 크 대		708	1
개 인 용 컴 퓨 터 (P C)		709	1
F A X		710	1
승 용 차		711	1
운 반 용 트 렉		712	1
오 토 바 이		713	1
보 일 러 시 설	연 탄	714	1
	가 스	715	1
	유 류	716	1
수 도 시 설	상 수 도	717	1
	간 이 상 수 도	718	1

【묻는 법】

책에서 가지고 계시는 문화용품 및 기재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작성요령】

- 문화용품 및 기재가 없으면 해당 품목의 “V표”란에 “V”표, 있으면 “○표”란의 1에 1에 “○”표를 한다.
- 조사기준일(10. 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문화용품 및 기재에 대하여 조사한다.

VII. 조사표류 검토, 보완 및 제출

1. 조사표의 검토 및 보완

가. 검토시기

- 조사표의 검토는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토하는 현지검토와 대상 어가의 조사가 끝난 다음 검토하는 사후검토가 있으나, 가급적 현지검토를 함으로써 조사표의 정리, 기타 사후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
- 일단 응답자와 면접조사가 끝나면 몇 가지 기본사항에 유의하여 조사원 자신이 검토하고 현지에서 수정한다.
 - 수정할 때에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두 줄을 옆으로 긋고 분명히 기입한다.
 - 어떤사정으로 현지검토가 불가능하였을 때는 자택에 돌아와서, 그날 그날의 조사표를 검토하고 재방문이 필요할 때는 표시를 해 두었다가 다음날 조사시에 이를 먼저 재조사한다.

나. 검토요령

- 기입의 누락여부
 - 첫째, “○”표할 곳에 표시가 있는가의 여부를 검토한다.
 - 표지의 “어가의 주된 어업형태”란
 - 1. 어업가구원 상황 의 ③~⑪란, 특히, ④~⑪란은 15세 이상만 조사
 - 2. 어업가구의 성격 의 “가”항, “나”항
 - 3. 어업의 종류 의 “나”항
 - 4. 어선 및 선원 상황 의 “종류”란, “선박재질”란
 - 6. 어업활동 의 “나”항
 - 7. 문화용품 및 가재보유 현황 의 “○표”란
 - 둘째, “V” 표의 누락여부
 - 4. 어선 및 선원 상황 및 5. 양식장 면적 에서의 “없음(V표)”란
 - 7. 문화용품 및 가재보유 현황 의 “V표”란

- 셋째,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부호) 기입 여부
 - 1. 어업가구원 상황의 “가구원수”란 및 ①란, ②란
 - 3. 어업의 종류 의 “가”항
 - 4. 어선 및 선원 상황 의 “어선명”, “어업의 종류”, “선령”, “톤수”, “마력수”, “선원수”란
 - 5. 양식장 면적 의 “면적(ha)”란
 - 6. 어업활동 의 “가”항, “다”항

○합계와 내용 숫자의 일치 여부

다음표를 참조하여 합계숫자와 내용숫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조 사 항 목	내 용
어업가구원 상황 ○가구원수	○합계 = 만15세이상(남+여) + 만15세미만(남+여) = 가구원번호 끝번호 ◇ 어업종사 고용인 등 포함
어선 및 선원 상황	○어선 계 = 동력 계+무동력 계 = 강조 계+목조 계+FRP 계 ○선원수 계 - 항해사 계 = 01어선항해사+02어선항해사+ ... +07어선항해사+08어선항해사 - 기관사 계 = 01어선기관사+02어선기관사+ ... +07어선기관사+08어선기관사 - 통신사 계 = 01어선통신사+02어선통신사+ ... +07어선통신사+08어선통신사 - 일반선원 계 = 01어선일반선원+02어선일반선원+ ... +07어선일반선원+08어선일반선원
양식장 면적	○합계 = 고막류 면적+피조개 면적+ ... +우렁챙이 면적 +기타 면적

다. 조사항목 상호간의 연관성과 합리성

조사항목 중에는 전후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있다.

이들 연관성 있는 조사 항목의 조사내용은 서로 합리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모순이 없는가 유의하여야 한다

- 어선 수척과 넓은 양식장을 경영하는 어가가 「어업가구원상황」에서 고용인이 없는 데 만 15세 이상 가구원에는 노약자만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경우
→ 이 때 고용인 누락 또는 만 15세 이상 가족의 누락여부를 확인
- 만 15세 이상 가족이 ⑥란의 1에 “○”표 있는 것은 반드시 ⑦란의 2~4 중 하나에 “○”표가 있어야 하며, ⑥란의 2에 “○”표 있는 것은 ⑩란의 1~4 중 하나에 “○”표가 있어야 함
- 100톤 어선 3척을 사용하면서도 3. 어업의 종류 의 “나”항 조사에서 양식업으로만 조사된 경우 → 3. 어업의 종류 및 4. 어선 및 선원 상황 조사내용을 확인

2. 조사표류 제출

- 조사표의 검토 및 보완이 완료되면 관할 통계사무소 및 출장소의 농수산팀장에게 조사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관련서류>

- ① 조사구역도 및 가구일람표 ② 조사표 ③ 조사원증 ④ 조사원 업무일지
- ⑤ 농·어가별 조사항목 현황표 ⑥ 조사지침서 ⑦ 기타 관련서류 일체
- 조사표는 조사구별로 묶어 제출한다.
- 어촌지역의 어업조사구에서 어가 및 농가 조사표가 모두 있을 경우 어업조사표를 앞에, 농업조사표를 그 뒤에 묶는다.

<조사표철 표지 작성 요령>

- 행정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어업조사구 번호

- 시·도, 시·군·구, 읍·면·동은 해당 행정구역 이름 및 부호를 기입한다
- 해당 농·어업조사구의 번호를, “농업/어업 ○○○” 로 기입한다.

○ 인구주택조사구별 농·어가수

인구주택조사구 번호	총 가구수	농·어가수(조사표 매수)		
		계(A+B)	농가수(A)	어가수(B)
-				
합 계				

행정 리명	행정리 번호
행정리 수	

- 해당농·어업조사구내에 농가 및 어가가 있는 인구주택조사구를 인구주택조사구번호 순으로 기입한다. 인구주택조사구가 많아 기입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기입, 부착한다.
- 총 가구수는 해당 인구주택조사구내의 전체 가구수를 기입한다.
- ※ 합계란의 총가구수는 '95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조사를 참고하고, 해당 농·어업조사구내에 농·어가 없더라도 인구주택조사구내의 총 가구수는 기입한다.
- 농·어가수는 2000 농·어업총조사 시험조사를 통해 조사된 농·어가수를 기입한다.
- ※ 해당 인구주택 조사구내의 농·어가수를 기입하며, 총 농·어가수는 조사표 매수와 일치해야 한다.
- 해당 행정리 명칭 및 번호를 기입한다.

□ 부 록



지 정 통 계
제 10146 호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법 제13조, 제14조)

2000어업총조사 시 험 조 사 표

(1999년 10월 1일 기준)

관 리 사 항	시·도	시·군·구	읍·면·동	어업 조사구 번호	어 가 일련번호	인 구 주 택 조 사 구 번 호

- 행정구역 부호는 '95.농어업총조사시의 분류부호 기입
- 인구주택조사구 번호는 '95.인구주택총조사시의 번호 기입

어가의 주된 어업형태			
동력선 사 용	무동력선 사 용	양식어업	어선비사용
1	2	3	4

- 조사대상 어가의 어업수입이 가장 많은 주된 어업형태를 물어, 그 부호 하나에만 ○표

조 사 일	1 9 9 9 년	1 0 월	일
응 답 자	☎ ()	-	성 명 : (인)
조 사 자	직		성 명 : (인)
검 토 자	직		성 명 : (인)

통 계 청

1. 어업가구원 상황

가 구 원 수	총 계		가 구 원 성 명 및 경 영 주 와 의 관 계 (경영주, 배우자, 자녀, 부, 모, 기타가족, 고용인 등으로 기입)	① 성 명 관 계	(1)	(2)	(3)	(4)	(5)	(6)	(7)	(8)	
	만15세 이상	남 여			경영주								
	만15세 미만	남 여		만나이(1999.10.1기준)	②								
				성 별	남 여	③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5 세 이 상 만 조 사	혼 인	기혼	혼 인	④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미혼	미 혼	④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최 종 학 력	초 등 학 교	초 등 학 교	⑤	1	1	1	1	1	1	1	1	1
		중 학 교	중 학 교		2	2	2	2	2	2	2	2	2
		고 등 학 교	고 등 학 교		3	3	3	3	3	3	3	3	3
		전 문 대 학	전 문 대 학		4	4	4	4	4	4	4	4	4
		대 학 교 이 상	대 학 교 이 상		5	5	5	5	5	5	5	5	5
	주 종 분 사 로 한 야	어 업	어 업	⑥	1	1	1	1	1	1	1	1	1
		어 업 이 외 의 일	어 업 이 외 의 일		2	2	2	2	2	2	2	2	2
		학 생	학 생		3	3	3	3	3	3	3	3	3
		기 타(한지, 무직지등)	기 타(한지, 무직지등)		4	4	4	4	4	4	4	4	4
어 업 에 중 심 사 로 한 야	1 개 월 미 만	1 개 월 미 만	⑦	1	1	1	1	1	1	1	1	1	
	1 ~ 2 개 월	1 ~ 2 개 월		2	2	2	2	2	2	2	2	2	
	2 ~ 3 개 월	2 ~ 3 개 월		3	3	3	3	3	3	3	3	3	
	3 개 월 이 상	3 개 월 이 상		4	4	4	4	4	4	4	4	4	
어 업 에 중 심 사 로 한 야	자 기 집 어 업	자 기 집 어 업	⑧	1	1	1	1	1	1	1	1	1	
	남 의 집 어 업	남 의 집 어 업		2	2	2	2	2	2	2	2	2	
	자 기 집 과 남 의 집 어 업	자 기 집 과 남 의 집 어 업		3	3	3	3	3	3	3	3	3	
	어 업 에 로 한 야	어 업 에 로 한 야		9	1	1	1	1	1	1	1	1	1
어 업 이 외 의 일 에 중 심 사 로 한 야	양 식 어 업	양 식 어 업	⑨	2	2	2	2	2	2	2	2	2	
	포 획 · 채 취 기	포 획 · 채 취 기		3	3	3	3	3	3	3	3	3	
	해 너 어 업	해 너 어 업		4	4	4	4	4	4	4	4	4	
	기 타	기 타		4	4	4	4	4	4	4	4	4	
어 업 이 외 의 일 에 중 심 사 로 한 야	1 개 월 미 만	1 개 월 미 만	⑩	1	1	1	1	1	1	1	1	1	
	1 ~ 2 개 월	1 ~ 2 개 월		2	2	2	2	2	2	2	2	2	
	2 ~ 3 개 월	2 ~ 3 개 월		3	3	3	3	3	3	3	3	3	
	3 개 월 이 상	3 개 월 이 상		4	4	4	4	4	4	4	4	4	
어 업 이 외 의 일 에 중 심 사 로 한 야	회 사 원	회 사 원	⑪	1	1	1	1	1	1	1	1	1	
	상 업	상 업		2	2	2	2	2	2	2	2	2	
	농 업	농 업		3	3	3	3	3	3	3	3	3	
	기 타	기 타		4	4	4	4	4	4	4	4	4	

- ⑥란의 "2" 에 ○표된 가구원은 ⑩, ⑪란에 대하여 반드시 조사
- 만 나이는 실제 생년월을 물어서, 연령조건표에 의거 확인 후 기입

2. 어업가구의 성격

가. 전·겸업 구분

지난 1년간 가구전체의 수입은?

어업수입뿐이다(전업어가)	201
어업수입이 더 많다(1종 겸업어가)	202
어업수입이 더 적다(2종 겸업어가)	203

나. 겸업가구의 어업이외 주종사 분야는?

회 사 원	211
상 업	212
농 업	213
기 타	214

- 1.어업가구원 상황 ⑥란의 "2" 및 ⑩, ⑪란의 어느 하나에 ○표된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가" 항의 202, 203 중 하나와 "나" 항의 어느 하나에 ○표 하여야 함

3. 어업의 종류

가. 지난 1년간(1998. 10~1999. 9)에 경영한 어업종류 중 어획물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어업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어업종류의 부호를 “나”의 표에서 골라, 하나만 기입】

300	부호		
-----	----	--	--

나. 지난 1년간(1998. 10~1999. 9)에 경영한 모든 종류의 어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래표의 해당부호에 ○표】

어업의 종류				부호	어업의 종류				부호
해양어업	원양어업	원양연승		301	천해양식어업	패류	굴		338
		원양트롤		302			고막류		339
		원양채낚기		303			바지락		340
		기타원양		304			피조개		341
연안어업	저인망	대형트롤		305			가리비		342
		동해구트롤		306			홍합		343
		대형기선저인망		307			동죽		344
		중형기선저인망(동해구)		308			기타패류		345
		"(서·남해구)		309			김		346
		근해형망		310			미역		347
		연안형망		311	다시마		348		
		연안조망		312	톳		349		
		대형선망		313	기타해조류		350		
	선망	소형선망		314	어류	방어		351	
		연안선망		315		넙치		352	
		부망	근해안강망			316	돔류		353
			연안안강망			317	조피볼락		354
	분기초망			318		기타어류		355	
	기타부망		319	갑각류		대하		356	
	차망	근해유자망				320	보리새우		357
연안유자망			321			기타갑각류		358	
인망	기선권현망		322			기타수산동물	우렁쉥이		359
	채낚기	근해채낚기			323		미더덕		360
연안채낚기			324		기타			361	
어업	연승	근해연승		325	중요생산어업	육상	어류		362
		연안연승		326			패류		363
	통발	근해통발		327			기타		364
		연안통발		328	해상	중요생산어업	어류		365
		정치망	정치망				329	패류	
	잠수기			330			기타		367
	공동어업	패류		331					
		해조류		332					
정착성수산동물			333						
구획어업	정치성구획		334						
	이동성구획		335						
신기	고어업		336						
	타어업		337						

4. 어선 및 선원 상황

조사기준일(1999.10.1)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선 및 선원상황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없 음 (V표)	401		어업의 종류	종류			선박재질			선명 (년)	톤 수 (t)					마 력 수 (HP)				선 원 수 (원양어업제외)								
	어 선 명			동	무	강	목	F	R		P	만	천	백	십	일	단	위	만	천	백	십	일	항	기	통	일	기
			종	동	무	강	목	F	R	P	만	천	백	십	일	단	위	만	천	백	십	일	해	관	신	기	기	일
		01		1	2	1	2	3																				
		02		1	2	1	2	3																				
		03		1	2	1	2	3																				
		04		1	2	1	2	3																				
		05		1	2	1	2	3																				
		06		1	2	1	2	3																				
		07		1	2	1	2	3																				
		08		1	2	1	2	3																				
		계 : ()척	99																									

소수점 이하

3. 어업의 종류 “나”의 표에서 주로 활동한 어업의 종류 부호 기입

- 소유권, 등록 및 신고 선박에 관계없이 실제로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주어선부터 차례로 기입
- 선박의 재질은 외판을 구성하는 주된 재질에 따라 구분

5. 양식장 면적

조사기준일(1999.10.1) 현재, 일정한 시설을 갖추어 실제 경영하고 있는 양식장 면적은 얼마입니까?
(소유권 여부 무관)

양 식 종 류		없 음 (V표)		면 적 (ha)		대 수 (척수)		양 식 종 류				면 적 (ha)		대 수 (척수)			
		백	십									일	단			위	미
		백	십	일	단	위	미	만									
패	살	고 막 류	501					해	투	돌	김	516					
		피 조 개	502							기	타	517					
		바 지 락	503							수	미	역	518				
	포	가 리 비	504						조	하	툇		519				
		홍 합	505								식	기	타	520			
		동 죽	506								류	건	김	521			
		기 타	507									홍	식	기	타	522	
투	굴	508					어	가	두	리	식	523					
	기 타	509						류	축	제	식	524					
건	굴	510					갭	축	대	하	526						
	기 타	511						각	제	보	리	새	우	527			
	수	굴	512							류	식	기	타	528			
홍 합		513					기	타	살	포	식	529					
가 리 비	514					수			하	우	렁	쟁	이	530			
기 타	515								산	하	식	기	타	531			
류							동	물									
							합				계	99					

소수점 이하

- 면적을 대수나 척수로 응답할 경우, 다음의 1ha당 시설기준에 의거 환산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기입
 - 굴 연승수하식 : 20대, - 굴 뗏목수하식 : 6대, - 미역, 툇, 다시마, 우렁쟁이 연승수하식 : 20대
 - 김, 파래 지주식 : 20척, - 김, 파래 부류식 : 25척, - 가두리식 : 20조

6. 어업활동

가. 최성어기의 종사자수

- 지난 1년간(1998. 10~1999. 9) 해상작업에 종사한 사람이 가장 많았을 때는 몇 명이었습니다가?

(명)

601	총수				
-----	----	--	--	--	--

나. 조업한 수역(원양어업은 제외)

- 지난 1년간 조업한 주된 어장의 수역은 어디였습니다가? 【주된 어장의 부호에 ○표】

12	해	리	어	내	611
어업자원보호수역내측					612
어업자원보호수역외측					613

- 어업자원보호수역은 “이승만 라인”을 기준으로 내측·외측으로 구분
- “주된 어장”은 주로 어로활동을 한 수역

다. 해상작업종사일수

- 조업한 어선척수와 종사한 사람수에 상관없이 지난 1년간 해상에서 작업한 일수를 기입

(일)

621	해상작업종사일수				
-----	----------	--	--	--	--

7. 문화용품 및 가재보유 현황

- 조사기준일(1999.10.1) 현재, 댁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화용품 및 가재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면 V표란에 V표, 있으면 O표】

		V표	O표
신	문 (일 간 지)	701	1
에	어 콘	702	1
피	아 노	703	1
비	디 오	704	1
전	축 (오 디 오)	705	1
전	자 렌 지	706	1
진	공 청 소 기	707	1
싱	크 대	708	1
개 인 용 컴 퓨 터 (PC)		709	1
F	A X	710	1
승	용 차	711	1
운	반 용 트 렉	712	1
오 토 바 이		713	1
보	연 탄	714	1
	가 스	715	1
	유 류	716	1
수 도	상 수 도	717	1
	간이상수도	718	1

인구주택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일련 번호	주소	가구주 성명	가구원수			가구구분										비고							
					계	남 자	여 자	농가					어가						농가 일련 번호	어가 일련 번호					
								경지 300평 이상	농축산물 판매금액 40만원	대기축1두 중기축3두 소기축40 풀벌5군	비 농 가	동력선 사용	무동력선 사용	양식 어업	어선 비사용										

시	구	읍	리	마을
도	시	면		
	군	동		

조 사 구 요 도

조사구 번호

--	--

확인자
작성자

조 사 구 위 치

방 향
표 시

범 례

A large grid area for data entry, consisting of approximately 25 columns and 40 rows.

통 계 청

2000 농·어업총조사 시험조사
조 사 표 첩

지정통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농·어업조사구
제 10141호				번
제 10146호				호

인구주택 조사구 번호	총 가구수	농·어가수(조사표 매수)			행정리 명	행정리 번호
		계 (A+B)	농가수 (A)	어가수 (B)		
합	계				행정리 수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통계출장소장	(인)
--------	-----	--------	-----	--------	-----

2000농·어업총조사 시험조사

조사원 업무일지

1999. 10. .

조사지역	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리 통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조사원 업무일지

검토자 확인(서명)

	1999년 10월 []일 []요일 날씨 []
수행사항	
수행의견	
	1999년 10월 []일 []요일 날씨 []
수행사항	
수행의견	
	1999년 10월 []일 []요일 날씨 []
수행사항	
수행의견	

농·어가별 조사항목 현황표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농(어)가 일련번호	조 사 항 목 부 호	항목 수
01		
02		
03		
04		
05		

농(어)가 일련번호	조 사 항 목 부 호	항목 수

《연령조건표》

만나이	西紀	띠	千支	만나이	西紀	띠	千支	만나이	西紀	띠	千支
0	1999	토끼	己卯	36	1963	토끼	癸卯	72	1927	토끼	丁卯
1	1998	범	戊寅	37	1962	범	壬寅	73	1926	범	丙寅
2	1997	소	丁丑	38	1961	소	辛丑	74	1925	소	乙丑
3	1996	쥐	丙子	39	1960	쥐	庚子	75	1924	쥐	甲子
4	1995	돼지	乙亥	40	1959	돼지	己亥	76	1923	돼지	癸亥
5	1994	개	甲戌	41	1958	개	戊戌	77	1922	개	壬戌
6	1993	닭	癸酉	42	1957	닭	丁酉	78	1921	닭	辛酉
7	1992	원숭이	壬申	43	1956	원숭이	丙申	79	1920	원숭이	庚申
8	1991	양	辛未	44	1955	양	乙未	80	1919	양	己未
9	1990	말	庚午	45	1954	말	甲午	81	1918	말	戊午
10	1989	뱀	己巳	46	1953	뱀	癸巳	82	1917	뱀	丁巳
11	1988	용	戊辰	47	1952	용	壬辰	83	1916	용	丙辰
12	1987	토끼	丁卯	48	1951	토끼	辛卯	84	1915	토끼	乙卯
13	1986	범	丙寅	49	1950	범	庚寅	85	1914	범	甲寅
14	1985	소	乙丑	50	1949	소	己丑	86	1913	소	癸丑
15	1984	쥐	甲子	51	1948	쥐	戊子	87	1912	쥐	壬子
16	1983	돼지	癸亥	52	1947	돼지	丁亥	88	1911	돼지	辛亥
17	1982	개	壬戌	53	1946	개	丙戌	89	1910	개	庚戌
18	1981	닭	辛酉	54	1945	닭	乙酉	90	1909	닭	己酉
19	1980	원숭이	庚申	55	1944	원숭이	甲申	91	1908	원숭이	戊申
20	1979	양	己未	56	1943	양	癸未	92	1907	양	丁未
21	1978	말	戊午	57	1942	말	壬午	93	1906	말	丙午
22	1977	뱀	丁巳	58	1941	뱀	辛巳	94	1905	뱀	乙巳
23	1976	용	丙辰	59	1940	용	庚辰	95	1904	용	甲辰
24	1975	토끼	乙卯	60	1939	토끼	己卯	96	1903	토끼	癸卯
25	1974	범	甲寅	61	1938	범	戊寅	97	1902	범	壬寅
26	1973	소	癸丑	62	1937	소	丁丑	98	1901	소	辛丑
27	1972	쥐	壬子	63	1936	쥐	丙子	99	1900	쥐	庚子
28	1971	돼지	辛亥	64	1935	돼지	乙亥	100	1899	돼지	己亥
29	1970	개	庚戌	65	1934	개	甲戌	101	1898	개	戊戌
30	1969	닭	己酉	66	1933	닭	癸酉	102	1897	닭	丁酉
31	1968	원숭이	戊申	67	1932	원숭이	壬申	103	1896	원숭이	丙申
32	1967	양	丁未	68	1931	양	辛未	104	1895	양	乙未
33	1966	말	丙午	69	1930	말	庚午	105	1894	말	甲午
34	1965	뱀	乙巳	70	1929	뱀	己巳	106	1893	뱀	癸巳
35	1964	용	甲辰	71	1928	용	戊辰	107	1892	용	壬辰